

의안번호	2212896
의 퇴 인	이해식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0.
추계번호	25F479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6년 0.09억원, 2028년 0.09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0.27억원(연평균 0.0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향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정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6~2028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30조제1항)	-0.09	-0.09	-0.09	-0.27	-0.09
- 취득세	-	-	-	-	-
- 재산세	-0.09	-0.09	-0.09	-0.27	-0.0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제1항 (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)	○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30조제1항 (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 중 통과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향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정
 - (재산세) 2023년도 재산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3년 재산세 감면실적: 0.09억원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 - 감면율: 취득세 및 재산세 25% 감면
- (추계방법)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향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정
- (재산세) 2023년 재산세 감면실적 0.0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1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비사업용으로의 전환으로 2021~2022년 재산세 감면액 보다 적은 2023년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2]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0.06	0.06	0.55	0.17	0.09
- 취득세	0	0	0.41	0	0
- 재산세	0.06	0.06	0.14	0.17	0.09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는 2026년 0.09억원, 2028년 0.09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0.27억원(연평균 0.0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6~2028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30조제1항)	-0.09	-0.09	-0.09	-0.27	-0.09
- 취득세	-	-	-	-	-
- 재산세	-0.09	-0.09	-0.09	-0.27	-0.0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